야간근무지침서

글라라의집

야간근무 지침

(용어의 해설)

야간근무란 평일, 휴일에 상관없이 22:00부터 익일 06:00까지 근무하는 경우의 근무를 말한다.

▣ 야간 근무지침 표준 ▣

1. [목적]

본 지침은 야간근무자의 근무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2. [적용]

본 지침은 다음의 범위에 적용된다.

1) 인적범위 : 야간근무자에게 최우선 적용된다. 다만 야간근무자가 아니더라도 야간(22:00 ~ 06:00)에 시설물의 안전 및 초동대처를 책임지는 종사자는 근무의 형태와 명칭, 인원수를 불문하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다.

2) 기관범위 : 시설물에 포함된 내, 외부

3) 시간범위 : 야간(22:00 ~ 06:00). 단, 시설내 야간교대근무 시간이 있는 경우 그를 포함 한다.

3. [근무준비]

야간근무자는 근무시작 전까지 당일을 기준으로 야간 안전취약요인을 확인하고 비상시 대피방법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.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기록으로써 유지한다.

1) 당일 입소현황, 당일 층별 최단 대피경로 확인(와상환자, 거동불편자 등 취약환자 위주로 파악)

2) 초동조치를 위한 소화기 위치 및 대피경로상 방해요인 제거

3) 비상시 시설 내외 비상연락망(소방관서, 의료기관) 확인

4) 야간업무 수행을 위한 지참물 : 마스터키 등

4. [준비확인]

야간근무자의 안전 준비사항은 다음 방식으로 확인한다.

1) 확 인 자 : 시설장(부득이한 경우 최선임자 順)

2) 보 고 자 : 야간근무자

3) 확인방법 : 야간근무자는 준비상태를 기록한 문서와 함께 구두로써 이를 보고하고, 이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보완토록 한다.

4) 확인종결 : 확인자는 준비상태가 충분함을 확인하고 인계를 종결 한다.

5. [근무실시]

준비상태를 확인 종결받은 야간근무자는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고 **시설의 순찰(라운딩)을 최소 30분에 1번씩 실시하고, 수급자 상태 및 시설안전점검등을 순찰하면서 그 순찰내용을 1일 3회 기록한다.** (단, 시설에 1시간 이내의 빈도로 별도 순찰 등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). 순찰(라운딩)시 특이사항은 야간근무일지에 기록한다.

(야간점검일지 : 일자, 점검시간, 수급자상태, 안전점검내용, 점검자명, 특이사항)

6. [야간근무자의 임무]

1) 야간근무 중 응급상황을 인지한 경우 응급상황처리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상급자 또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. 보고는 상황에 따라 업무 인수인계로 대체할 수 있다.
2) 야간근무 중 화재 등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 입소자를 최단경로로 대피시키고, 비상연락망의 가동 및 가능한 범위에서 초기진화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.

7. [야간점검]

야간근무자는 기록물(야간점검일지)에 준하여 시설물 및 입소자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, 문제 발생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.

8. [건강권 보호 및 권익보호]

1) 야간근무 인력에 대한 특수 건강검진 시행
(연 1회, 특수 건강검진 시기 및 항목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용)한다.
2) 야간전담 근무자의 건강을 위해 야간근무와 낮 근무 전환이 가능하도록 근무선택권 보장한다.
3)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확히 하고 근로계약서에 명기한다.

9. [취침시간]

1) 기관의 취침시간은 수급자의 평균 수면시간을 고려하여 21시로 한다.

10. [개별욕구존중]

1) 야간에 개인 활동 희망시 자유롭게 욕구를 표현할 수 있고, 해당 수급자가 개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수급자의 수면을 방해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을 2시간 동안 운영하며, 수급자가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.
(독서, 음악감상, 영화보기, 뉴스 및 드라마시청, 컴퓨터 사용 등)

11. [기타사항]

1) 야간근무 편성 직종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.
2) 휴게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응급대처 업무를 우선 처리하고 근무시간에 휴게를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.